

#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4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4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제안이유

-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·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을 명시하여 위탁업체선정 및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 주요골자

-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· 운영에 대한 위탁기간을 3년으로 명시함(안 제2조).

## 개정조례안 : 별첨

##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## 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- 「하수도법」 제 7조 및 동법시행령 제 7조

##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##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## 사전예고결과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07. 1. 12 ~ 2007. 1. 31(20일간)

## 기타 참고사항 : 별첨

-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: 기획예과-8420(2006.11.14)

#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관리 · 운영) ①하수종말처리시설은 안산시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다만, 시장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·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하수도법」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· 운영을 수탁할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에게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수탁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수탁기간은 협약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.

소관 실·과		상하수도사업소 하 수 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하수과장 지 병 구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시설관리담당 서 형 식
	담당자 성명·전화	문 원 식 (행정 2583)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2조(관리 · 운영)</b> ①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· 운영은 안산시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안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수탁자(기관)의 선정은 하수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· 운영을 수탁할 자격을 갖춘 자(기관)중에서 선정한다.</p> <p>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·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2조(관리 · 운영)</b> ①하수종말처리시설은 안산시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·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하수도법」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· 운영을 수탁할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에게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.</p>